

## 4. 제주도 내 거주외국인의 참정권 및 피선거권 부여의 법적 검토

### (1) 서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사의 형성과정에 참여하거나 국가권력 행사를 통제,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적 권리이다. 이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늘어가는 거주외국인의 정치적 참여의 필요성이 앞으로 점점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4월 4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 1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는 국제결혼율의 대만 수준의 상승을 전제) 이처럼 커다란 사회적 세력으로 부상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거주외국인들의 참정권의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 거주외국인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외국인 정책에 있어 다른 외국인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갈등 없는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거주외국인의 참정권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2) 거주외국인 참정권 관련 현황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위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상 거주외국인들은 투표행위 이외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선거권과 함께 주어지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어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고,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출국권고의 대상이 되며(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67조), 투, 개표 참관도 할 수 없으며,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없고(정당법 제22조),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낼 수도 없다(정치자금법 제31조).

###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거주외국인의 참정권의 확대 및 피선거권 부여 가능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면적인 참정권 및 피선거권 부여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반발 및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수성 및 특별자치도로서의 정치적 특수성을 살려 시범적으로라도 정책을

실현해 볼 가치가 있음. 앞서 말한 거주외국인의 증대 및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 및 현 상황에서의 거주외국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

### [ 해외의 외국인 참정권 부여현황 ]

국가명	선거권	피선거권	요건
스웨덴	○	○	3년 이상의 합법적 거주, 18세 이상
덴마크	○	○	3년 이상의 합법적 거주, 18세 이상
노르웨이	○	○	3년 이상의 합법적 거주, 18세 이상
네덜란드	○	○	5년 이상의 합법적 거주
아일랜드	○	○	6개월 이상의 합법적 거주
영국	△	△	영국 연방시민 및 아일랜드 시민
독일	△	△	일부 주와 시에서 실시
호주	△	△	6개월 거주 영국시민은 선거권.
캐나다	△	△	대부분의 주에서 일정기간 거주자에 부여
프랑스	△	×	5년 이상 거주 외국인